새로운 도약, 구민과 함께하는 서구의회

2026. 9. 14.

심사결과보고

의안 번호	의 안 명	심사결과	비고
4619	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원안가결	

대전광역시 서구의회

의회운영위원회

의안 번호	4619

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 회 운 영 위 원 회

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6. 9. 14.

의회운영위원회

1. 회부안건

「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2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6년 8월 27일, 김태민 의원 외 찬성의원 9명

나. 회 부 일 자 : 2026년 8월 2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

다. 상정 및 심사일자 : 제299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

의회운영위원회 상정 및 심사·의결(2026. 9. 14.)

3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으로 이원화된 제도를 입법·법률고문으로 통합하여 운영체계를 정비하고, 실효성 있는 입법 및 법률 자문 기능을 확보함으로써 의회의 법률 사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으로 이원화된 자문 체계를 입법·법률고문 단일 체계로 통합함(안 제2조)

○ 입법·법률고문 위촉 시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함(안 제4조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: 김현아)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 그동안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던 자문체계를 '입법·법률고문' 단일 체계로 통합하여 행정적·예산적 효율성을 제고하고, 실효성 있는 자문기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개정 목적이 타당함.

○ 아울러 입법·법률고문 위촉시 운영위원회의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특정 고문의 독단적 위촉을 방지하고 상임위원회의 견제 기능을 충실히 반영하려는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.

○ 상위법인 「지방자치법」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, 의회 자문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적정한 개정으로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6. 심 사 결 과 : "원안가결"

7. 소 수 의 견 : 없 음

8. 기타특이사항 : 없 음

대전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

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입법고문”을 “입법·법률고문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3호(종전의 제4호) 중 “관한 사항의”를 “관한”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.

2.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과 입법정책에 관한 자문

4.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 또는 이에 관한 자문

5. 기타 대전광역시 서구 의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이 의뢰하는 법률사항의 자문

② 입법·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추천으로”를 “협의를 거쳐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「변호사법」 제7조”를 “「변호사법」 제7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(별지 제1호 서식)”을 “(별지 제1호서식)”으로, “(별지 제2호 서식)”을 “(별지 제2호서식)”으로 한다.

제5조제2호 중 “제2조제3항 및 제4항”을 “제2조제2항 및 제3항”으로 한다.

제6조 단서 중 “다만, 법률고문의 경우”를 “다만,”으로 한다.

제7조 중 “및 2항”을 “각 호”로, “별지 제3호 서식”을 “별지 제3호서식”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, 같은 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법률고문”을 “입법·법률고문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중 “『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』”를 “「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」”로, 같은 서식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, 같은 서식 중 “(입법·법률)고문직”을 “입법·법률고문직”으로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 중 “『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』 제4조에 의하여”를 “「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」 제4조에 따라”로, 같은 서식 중 “(입법·법률)고문”을 “입법·법률고문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전에 위촉된 법률고문은 이 조례에 따른 입법·법률고문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직무)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	제2조(직무) ① 입법・법률고문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	2.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과 입법정책에 관한 자문
3. 대전광역시 서구 의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이 위임한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	<삭 제>
<신 설>	4.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 또는 이에 관한 자문
4. 대전광역시 서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운영 및 의안심사・처리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	3. ----------관한 ----------
<신 설>	5. 기타 대전광역시 서구 의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이 의뢰하는 법률사항의 자문
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	② 입법・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.
1.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	
2. 의장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	
3. 기타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의 자문	
③ 입법・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	<삭 제>

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.	
④ (생 략)	③ (현행 제4항과 같음)
제4조(위촉) ① 입법·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.	제4조(위촉) ①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협의를 거쳐 ----------.
1. 「변호사법」 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	1. 「변호사법」 제7조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
2.·3. (생 략)	2.·3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의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·법률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(별지 제1호 서식)를 받은 후 위촉장(별지 제2호 서식)을 교부한다.	③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(별지 제1호서식)---------- ----------(별지 제2호서식)---------.
제5조(해촉) 의장은 입법·법률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	제5조(해촉)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	2. 제2조제2항 및 제3항---------- --------
3. ~ 6. (생 략)	3. ~ 6.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임기) 입법・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를 마쳐도 수행 중인 소송은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.	제6조(임기) ----------. 다만, ----------.
제7조 (실적부 비치) 제2조제1항 및 2항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자문기록부를 의회사무국에 비치・정리하여야 한다.	제7조(실적부 비치) ---------- 각호----------- 별지 제3호서식----------.
제9조(고문료 등) ① (생 략)	제9조(고문료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입법・법률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	<삭 제>
③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「대전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」를 준용하여 지급한다.	② 입법・법률고문----------.
[별지 제1호서식]	[별지 제1호서식]
승 낙 서	승 낙 서
본인은 『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입법.법률고문 운영 조례』가 정하는 바에 의	본인은 「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입법.법률고문 운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

하여 귀 의회의 (입법.법률)고문직 위촉을 승낙합니다.	라 귀 의회의 입법.법률고문직 위촉을 승낙합니다.
[별지 제2호서식]	[별지 제2호서식]
위 촉 장	위 촉 장
귀하를 『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입법.법률고문 운영 조례』 제4조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(입법.법률)고문으로 위촉합니다.	귀하를 「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입법.법률고문 운영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입법.법률고문으로 위촉합니다.